

의안번호	2220518
의 퇴 인	송옥주 의원
회 답 일	2026. 9. 4.
추계번호	26B4060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의2 (계란 기준가격의 조사 및 고시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 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고, 가격조사 업무를 전문기관· 단체에 지정·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5조의2 (계란 기준가격의 조사 및 고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¹⁾이 축산물의 유통시장 효율화를 위해 국내산 축산물 6개 품목(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, 계란, 벌꿀), 국내산 부산물 2개 품목(소, 돼지), 수입산 축산물 2개 품목(쇠고기, 돼

1) 제36조(축산물품질평가원)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축산물 등급판정
2.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
3.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
4.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
5. 축산물 등급판정·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사업
6.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

지고기) 그리고 수입산 부산물 2개 품목(소, 돼지)까지 총 11개 품목에 대한 유통경로, 유통비용, 거래가격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있음

- 현재 조사된 품목별 실시간 도·소매 가격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(KASS)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(다봄) 포털을 통해 투명하게 상시 공개되고 있음

□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, 가격조사 전문기관 지정·위탁 등의 법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경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□ 다만, 현재 가격조사의 구체적인 방법·조사주기 및 가격조사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위탁 대상 범위, 조사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nabo.go.kr